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진환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538 번 호

발의연월일: 2024. 10. 10.

발의의원: 이진환, 박경원, 김상수,

이상기, 김지훈(국), 김지훈(민)

김영실, 한송연, 박윤옥,

이수런

1. 제안 이유

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·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령운전자의 자진반납을 유도하며 지원 항목을 세분화하여 면허 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"운전면허", "고령운전자"의 정의를 규정함. (안 제 2조)

나. 교통안전협의체 참석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 6조)

다. 교통안전교육 등을 규정함. (안 제7조)

라.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등을 규정함. (안 제10조)

마. 지원금 환수를 규정함. (안 제11조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5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

6. 관련법령 : 덧붙임

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"운전면허"란 「도로교통법」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.
- 6. "고령운전자"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.

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「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.

제9조의2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2조로 한다.

제10조(종전의 제9조의2)의 제목 "(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

등)"을 "(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고령운전자(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가진 65세이상의 사람을 말한다)"를 "고령운전자"로, "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"을 "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「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남양주시 지역화폐 또는 교통카드 등 지원(단, 1인 1회에 한한다.)
- 2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 이용 관련 사업지원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11조(지원금 환수)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받은 사람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.
 - 1.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
- 2. 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12조(종전의 제10조) 중 "조례"를 "조례의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	제2조(정의)
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5. "운전면허"란 「도로교통
	법」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
	<u>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</u>
	<u>를 말한다.</u>
<u><신 설></u>	6. "고령운전자"란 운전면허를
	받은 사람 중 남양주시에 주
	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
	이상의 사람을 말한다.
제6조(협력체계의 구축) (생 략)	제6조(협력체계의 구축) ① (현행
	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
	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「남양주
	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
	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
	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
	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
	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제7조(교통안전교육 등) ① ~ ③	제7조(교통안전교육 등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
	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

제9조의2(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등) 시장은 「도로교통법」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(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가진 65세이상의 사람을 말한다)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 할
<u>수 있다.</u>
제10조(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
<u>원)</u>
<u>ਹ</u>
<u>령운전자</u>
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
호의 사항을 지원
1. 「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
권 발행 및 운영 조례」에 따
른 남양주시 지역화폐 또는
교통카드 등 지원(단, 1인 1회
에 한한다.)
2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
인정하는 교통수단 이용 관련
<u>사업지원</u>
제11조(지원금 환수) 시장은 제10
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받은 사
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부
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.
1.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

원을 받은 경우2. 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가. 자치법규안명
 - 「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」
- 나. 재정 수반 요인
 - 제6조(협력체계의 구축)
 - ②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「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- 제7조(교통안전교육 등)
 - ④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
 - 제10조(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등)

시장은 「도로교통법」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- 1. 「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남양주시 지역화폐 또는 교통카드 등 지원(단, 1인 1회에 한한다.)
- 2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 제2항 제1호, 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(개정안 제6조 제2항)

- 교통안전협의체 심의에 따른 위원 참석 수당 예산*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
- * 2025년 본예산(안): 2,400천원(100천원 × 6명(市 공무원 제외 위원) × 4회(분기별))
- * 교통안전협의체 구성: 총 9명(임기(3년): 2025.1. ~ 2027.12.)
- 당연직(5) : 교통정책과장, 교통시설1,2팀장. 교통관리계장(남·북부경찰서)
- 위촉직(4) : 도로교통공단1, 교통전문가3

- (개정안 제7조 제4항)

·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교육의 경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예측하기 어려워 비용을 추계하기가 어려움.

- (개정안 제10조 제1호)

- · 19년부터 국비 또는 도비 매칭으로 매년 진행해온 사업^{*}으로써 해당 조례안의 개정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 - * '24년 89백만원(국27, 도31, 시31) / '23년 197백만원(도92, 시105)

- (개정안 제10조 제2호)

· 현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(10만원 지원) 이외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으며, 향후 추가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측하기 어려워 비용을 추계하기가 어려움

4. 작성자

교통국 교통정책과장 박 진 범

붙 임 관계법령

☑ 「도로교통법」

제93조(운전면허의 취소·정지)

-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(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(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. 다만, 제2호, 제3호, 제7호부터 제9호까지(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), 제14호,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,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.
 - 20.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(失效)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. 다만,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.

☑ 「교통안전법」

- 제3조(국가 등의 의무)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

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이하 "국가등"이라 한다)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·교육·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.